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람	기 관 의 장



포항시보

제769호 2010. 2. 23(화)

- 부시장지시사항..... 2
- ◀ 입법예고 ▶
- 포항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제2010-226호) 5
- ◀ 고 시 ▶
- 포항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제2010-4호) 15
- ◀ 공 고 ▶
- 공 인 공 고(제2010-239호) 19

회 람									
--------	--	--	--	--	--	--	--	--	--

부시장 지시사항

- 2010. 2. 22(월) 간부회의 -

관 리 번 호	지 시 내 용	주관부서
훈 시 (2. 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면업무 추진 노고를 치하 드리며, 시장님 부재중인데 시정운영에 문제가 없도록 맡은바 업무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람 ○ ‘백남준 작품 전시회’ 유치 MOU 체결 준비에 만전 - 서울 방문(자치행정국장, 시립미술관장)하여 전시회 유치를 위한 사전준비로 시장님 귀국시 MOU 체결이 가능토록 할 것 ○ 쌍용자동차의 영일만항 이용, 영일만항의 물동량이 확보될 수 있도록 추진하기 바람 ○ 주요 공항과 역에 비치된 시 관광홍보물 점검 및 조치 - 주요 공항과 역에 비치된 각종 시 홍보물 및 관광 안내물의 비치상황 점검 및 수정·보완이 필요한지 종합적으로 검토·분석하여 보고·조치하기 바람 ○ 관광안내소 운영실태 및 홍보간판 점검·정비 바람 - 시내 관광안내소 운영실태 및 문제점을 점검하여 보고 하기 바람, 포항공항 관광안내소 뒤편(시정 구호) 내용을 검토하여 교체·정비할 것 ○ 칠포, 월포 해수욕장 공공시설물 점검 정비 철저 - 해수욕장 화장실 청결상태 및 시건장치 점검 등 공공시설물 환경정비에 만전을 기할 것 	<p>전 부 서</p> <p>시립미술관</p> <p>해양항만팀</p> <p>관광진흥과</p> <p>관광진흥과</p> <p>수산진흥과</p>

관 리 번 호	지 시 내 용	주관부서
<p>훈 시 (2. 2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전거도로 추진 철저 및 예산 낭비가 없도록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 지시로 자치단체별 경쟁으로 무분별한 시설추진이 우려되는바 철저한 계획수립 시행으로 예산낭비가 없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 정월대보름을 맞아 산불예방 철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재 및 산불이 발생치 않도록 근무에 철저를 기하고 행사진행에도 만전을 기하기 바람. ○ 영농철 대비 철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내 저수지 등의 저수율, 담수율을 점검·보고하기 바라며, 수리시설은 조기 보수로 영농준비에 문제 없도록 조치 바람. ○ 해빙기 다중집합시설, 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어린이 놀이시설 등의 안전점검에 철저를 기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형시설은 종합적 점검 추진을, 소형시설은 담당 부서별로 점검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 이명박 정부 출범 2주년(2. 25) 경축분위기 조성하기 바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축분위기 조성을 위한 가로기 게양, 국기달기, 현수막 게첨, 덕실마을 축제행사 등에 만전을 기할 것. ○ 한동대학교 진입로 높은 과속방지턱 정비하기 바람 ○ 각 부서장 책임하에 조기집행 추진 철저 ○ 각종 행사 등과 관련하여 선거법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바람 	<p>건 설 과</p> <p>도시녹지과 남·북구청</p> <p>농축산과</p> <p>재난안전과 전 부 서</p> <p>자치행정과 전 부 서</p> <p>건 설 과</p> <p>전 부 서</p> <p>자치행정과 전 부 서</p>

관 리 번 호	지 시 내 용	주관부서
<p>훈 시 (2. 2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합노조 총투표와 관련 근무시간 중 투표하는 등의 불법행위가 없도록 하고, 각 부서장은 투표와 관련하여 직원들의 불만은 없는지 점검 바람 ○ 각 부서별 일자리 창출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람 	<p>자치행정과 전 부 서</p> <p>경제노동과 전 부 서</p>

입법예고

포항시 공고 제2010-226호

「포항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포항시장 박승호

2010. 2. 17

포항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1. 제정이유

포항시 시설관리공단을 설치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체육시설, 문화복지시설, 교통시설 등의 위탁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함으로써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가. 포항시 시설관리공단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나. 공단의 목적, 명칭 등 정관의 기재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다.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 라. 시가 설치한 공공시설물 관리·운영 등 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19조)
- 마.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안 제24조)

3.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146조
- 「지방공기업법」 제76조

4.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 3.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포항시 자치행정과(주소 : 포항시 남구 대잠동 1001 시설관리공단설립준비TF팀 ☎ 054-270-2392 FAX : 270-2070, E-mail : sun124@korea.kr)에 서면, 전화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이유)
-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연락처
- 다. 기타 필요한 사항

5. 기 타

자세한 내용은 포항시 홈페이지(www.ipohang.org)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포항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부.

포항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포항시시설관리 공단을 설립하여 포항시장이 지정하는 공공시설물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함으로써 시민생활의 편익과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포항시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 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① 공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단은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포항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4조(자본금) ① 포항시(이하 “시” 라 한다)는 공단운영에 필요한 자본금 전액을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자본금 납입의 시기와 방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정관) ①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에 관한 사항
5. 사업에 관한 사항
6. 임·직원에 관한 사항
7.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8. 이사회에 관한 사항
9.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10. 공고에 관한 사항
11.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공단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공단의 정관은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6조(설립등기) 공단은 그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2장 임원 및 직원

제7조(임원) 공단의 임원은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및 감사로 하며, 이사 및 감사의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8조(이사장) ① 공단의 이사장은 시장이 임면하되, 시장이 이사장을 임명할 때에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6조의2에 의해 구성하는 공단임원 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자 중에서 임명한다.

②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공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정관에서 규정한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시장은 공단사업의 경영평가에서 경영실적이 현저히 부진하거나 행정안전부장관의 권고가 있을 경우 이사장을 해임할 수 있다.

제9조(이사) ① 이사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이사장이 임면한다. 다만, 정관에서 규정한 당연직 이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상임이사는 시장이 임면하며 상임이사를 임명할 때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

③ 이사는 정관 규정에 따라 공단의 업무를 분장한다.

④ 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하며, 이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정수는 이사 정수의 100분의 50미만으로 한다.

제10조(감사) ① 감사는 시장이 임면한다.

② 감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한다.

③ 감사는 사업의 경영상태를 감안하여 비상임으로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의하여 감사를 비상임으로 할 경우에는 시의 감사담당 부서의 장을 당연직 비상임 감사로 하고,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11조(임원추천위원회) ① 공단의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공단에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비상설 위원회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6조의3에 의한다.

③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공단의 내규로 정한다.

제12조(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이 경우 임명권자는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또는 직무이행실적 평가결과, 경영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임원의 연임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사장의 연임 기준은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다.

제13조(임·직원의 겸직금지) 공단의 임원 및 직원은 그 직무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임원은 사장의, 직원은 이사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제14조(이사회) ① 공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회의 의장은 당연직이사를 제외한 비상임이사 중에서 호선하며, 선임된 비상임이사는 그 임기동안 의장이 된다.

④ 의장은 이사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다만 이사회의 의장으로 선임된 비상임이사의 신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가 소집하고 주재한다.

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⑥ 비상임이사에 대해서는 이사회 출석 등에 따라 회의참석수당, 여비 등 실비 이외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사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월정액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⑦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5조(임원의 대표권 제한) 공단의 이익과 이사장 또는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사장 또는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공단을 대표하지 못하며, 감사가 공단을 대표한다.

제16조(비밀누설 금지 등) 공단의 임·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이외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7조(이사회의 참여제한) 공단의 임원은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과 이해 관계가 있는 의안을 심의할 경우에 이사회에 참여할 수 없다.

제18조(직원의 임면)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제3장 사 업

제19조(사업) 공단은 제1조에 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시가 설치한 공공시설물 관리·운영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위탁하는 사업으로서 시장의 승인을 얻은 사업
3. 제1호와 제2호의 부대사업 및 경영수익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0조(대행사업의 비용부담) ① 공단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에 위탁자의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 위·수탁계약에 의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의한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의한 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영 제63조에 의하고 그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상호 협의한다.

제4장 재무회계

제21조(세입) 공단사업운영으로 발생하는 모든 수입금은 포항시 세입으로 한다.

제22조(사업연도) 공단의 사업연도는 포항시의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의 한다.

제23조(계리의 원칙) ① 공단은 사업의 성과 및 재정상태를 명백하게 파악 할 수 있도록 회계거래를 발생 사실에 따라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계리(計理)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사업분야별로 회계를 분리하여 계리(計理)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공단의 회계규정으로 정한다.

제24조(사업계획 및 예산) ① 공단의 이사장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시장이 정한 예산지침에 따라 사업연도 개시 60일전까지 편성 하여야 한다.

② 공단의 이사장은 예산이 성립 또는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보고된 예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④ 공단의 이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시정명령에 따라 예산을 수정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25조(결산) ① 공단은 매 사업연도의 결산을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결산종료 후 결산서를 작성하여 영 제36조에서 정하는 서류 및 시장이 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 보고서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의하여 제출된 결산서가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26조(손익금의 처리) ① 공단은 결산한 결과 이익이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 1. 이월 결손금의 보전
- 2. 이익준비금의 적립
- 3.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 적립금으로 적립

② 공단은 매 사업연도의 결산결과 손실이 생긴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 1.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 적립금으로 보전
- 2. 이익준비금으로 보전
- 3. 결손금으로 차기 이월

③ 제1항과 제2항에 의하여 결손금을 보전할 경우에는 결손의 내역과 이유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7조(기금조성 등) ① 이사장은 사업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와 시장의 승인을 얻어 공단에 기금을 설치·운영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한 기금의 조성을 위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28조(단기차입금 등) ① 공단은 시장의 승인을 얻어 상환기간이 2년 이내의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② 공단은 예산내의 지출에 있어서 현금이 부족한 때에는 일시 차입할 수 있으며, 이의 차입한도는 예산으로 정한다.

③ 제2항에 의한 일시차입금은 해당연도에 상환하여야 한다.

제29조(공유재산의 무상사용 등)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공단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단에 공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을 무상대부(무상사용수익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다만,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장 감 독

제30조(감독) ① 시장은 공단의 사무를 감독한다.

②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2. 인사규정, 임·직원의 보수규정(연봉제규정, 복리후생비규정 포함) 및 퇴직금규정(명예퇴직규정 포함) 등 중요한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1조(보고 및 검사) 시장은 공단의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자료의 제출 및 보고를 명할 수 있다.

제6장 보 칙

제32조(준용)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공기업법」 및 「예산회계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3조(권한의 위탁) 시장은 공단의 설립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할 경우에는 권한의 일부를 이사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34조(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이사장의 요청에 의하거나 공단의 운영과 관리의 직정을 기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단 정원의 10분의 1의 범위 안에서 한시적으로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35조(파견공무원의 인사평정·관리) 파견된 공무원에 대한 인사평정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의하여 담당관, 팀·과·소와 동일하게 평정 관리 한다.

제36조(공인의 비치) 공단은 수탁사업을 위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 「포항시 공인 조례」에 의하여 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다.

제3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권리 의무의 승계) 공단은 이 조례의 시행 후 공단의 설립 및 사업과 관련된 시 출자 및 관리 위탁 자산에 관한 의무를 포괄 승계한다.

제3조(정관 및 제규정) 최초 공단설립에 따른 정관·제규정중 시장이 제정 및 공포한 것은 공단에서 행한 것으로 본다.

제4조(예산의 경과조치) ① 이 조례에 의하여 공단의 예산이 확정될 때 까지 공단설립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경비는 시의 일반회계에서 지출 한다.
② 설립연도의 예산은 공단설립 후 1개월 이내에 작성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조(최초로 구성되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설치) 임원후보자의 추천을 위하여 최초로 구성하는 임원추천위원회는 제11조제1항에 불구하고 포항시에 둔다.

제6조(최초의 사업연도에 대한 경과조치) 공단의 최초의 사업연도는 공단 설립일로부터 해당연도의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조례제정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안 : 포항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고 시

포항시 고시 제2010 - 4호

포항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포항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같은법 제9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 2. . . .

포항시장 박승호

- 1. 사업 시행지 : 포항시 북구 흥해읍 칠포리 549-3번지 일원
-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시설)
 - 명칭 : 소로2류 44호선
-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주소 : 포항시 북구 덕산동 관청길 11번지
 - 성명 : 포항시 북구청장
- 4. 사업계획 내용

사업명	위치	사업내용	시행기간(변경)	사업시행자
소로2-44	포항시 북구 흥해읍 칠포리 549-3번지 일원	L=120m, B=8m (894㎡)	- 당초 : 2008.7.3~ 2009.12.31 - 변경 : 2008.7.3~ 2011.12.31	포항시 북구청장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 명세

(토 지)											
일련	토지소재지		지 번	지 목	지 적	편입면적	토지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비 고
번호	읍 면	동 리			(㎡)	(㎡)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1	홍해	칠포리	922	도 로	6,393	171		국(건설교통부)			
2			548-6	대 지	4	4	포항시 북구 홍해읍 남성리 318-3 경보전원맨션506	김억구			548-4
3			548-2	도 로	40	40	칠포동 548	이학수			
4			548-5	대 지	3	3	포항시 북구 홍해읍 남성리 318-3 경보전원맨션506	김억구			548-4
5			549-3	도 로	69	69		조종근			미등기
6			549-4	도 로	4	4		조종근			549-2
7			561-4	도 로	2	2		정득술			561-3 미등기
8			551-1	대 지	5	5	칠포동 59	원실근			미등기
9			550-1	대 지	8	8		국(경상북도)			
10			550	대 지	9	9		국(경상북도)			
11			550-2	대 지	5	5		국(경상북도)			
12			559-2	대 지	63	63		국(경상북도)			
13			560-6	대 지	26	26		최여수			560-3 미등기
14			558-6	대 지	2	2		김진수			558-4
15			558-3	대 지	48	48	칠포동 560-1	김진수의 2			
16			559-6	도 로	25	25	칠포동 148	김천곤			559-3 미등기
17			560-5	도 로	47	47	칠포동 527	최여수			미등기
18			560-4	대 지	4	4	칠포동 527	최여수			미등기
19			558-2	대 지	36	36	칠포동 560-1	김진수의 2			
20			558-5	도 로	2	2	칠포동 415	박만조			558-1
21			149-3	대 지	7	7	포항시 남구 대잠동 470-6 이동우방파크빌 105-1406	조규익			
22			149-2	대 지	7	7	칠포동 149	최분년			
23			150-4	대 지	12	12	포항시 남구 대잠동 470-6 이동우방파크빌 105-1406	조규익			
24			151-2	대 지	3	3	서울시 마포구 성산동 590-5	김영순			151-1
25			151	대 지	6	6		국(경상북도)			
26			150-3	대 지	36	36	포항시 남구 대잠동 470-6 이동우방파크빌 105-1406	조규익			

27		150-2	대 지	109	109	칠포동 150	정광지			
28		152-2	대 지	23	23		국(경상북도)		152-1	
29		152-1	도 로	3	3		국(건설교통부)			
30		152-4	대 지	2	2	칠포동 153	이귀순	근저당 (채무:윤석해) 금사천오백만원	홍해농업협 동조합	152-3
31		140-2	대 지	27	27	칠포동 153	윤석해			140-1
32		142-2	도 로	99	30	칠포리 142	김봉상의2			
33		140	대 지	35	35		국(경상북도)			
34		148-3	도 로	11	11	칠포동 148	김유관			148-2
35		148-2	도 로	23	2	칠포동 148	김유관			
36		143-2	도 로	3	3		영일군			
37		142-3	대 지	28	5		국(경상북도)			

(건 물)

일련 번호	건물소재지 지번		지번	지목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 량 (면적)	관 계 인			비 고
	읍 면	동 리						성 명	주 소	권리의종류 및 내용	
1	홍해	칠포리	548-4		건물	까추	0.5	김억구	포항시 북구 홍해읍 남성리 318-3 경보전원맨션506		
					담장	블록	22.88				
					철대문		5.27				
					화단	블록	14.2				
					대문문 주	블록	2 개				
					감나무	30년생	1 주				
2			550-2		점포	벽돌 스레트	1.04	김연식	포항시 북구 홍해읍 칠포리 550		
3			559-4		담장	블록	1.80	박선분	포항시 북구 홍해읍 칠포리 559		
					철대문		4.00				
					대문문 주	블록	2 개				
4			549-2		창고	벽돌 슬라브	1.82	정정식	포항시 북구 홍해읍 칠포리 549-1		
					담장	블록	16.38				
					철대문		6.00				
					대문문 주	블록	2 개				
					콘크리트마당9.80						
					대문천 정	콘크리트	3.20				
					수도		1 개				
					가마솔		1 개				

5			561	철대문		8.40	정학용	포항시 북구 흥해읍 칠포리 561	
				대문문주	블록(타일)	2 개			
6			560-1	주택	조립식	41.19	김진수	포항시 북구 흥해읍 칠포리 560-1	공유 19분의 15
				창고	조립식	14.28	김상태	흥해읍 칠포리 558-3	공유 19분의 2
				화장실	블록 스투트	3.23	김상자	해도동14-17 무궁화(아)라-306	공유 19분의 2
				담장	블록	36.55			
				철대문		3.42			
				대문문주	블록	2 개			
				콘크리트마당31.00					
				세면대	콘크리트	4.75			
				수도		1 개			
7	흥해	칠포리	558-4	주택	벽돌 슬라브	65.88	김진수	포항시 북구 흥해읍 칠포리 560-1	공유 19분의 15
				창고	벽돌 슬라브	5.13	김상태	흥해읍 칠포리 558-3	공유 19분의 2
				담장	블록	5.62	김상자	해도동14-17 무궁화(아)라-306	공유 19분의 2
				철대문		2.2			
				계단	콘크리트	3.2			
8			151-1	담장	블록	1.80	김영순	서울시 마포구 성산동590-5	
				대문	목조	12.40			
				대문문주	목조	2 개			
9			150-1	주택	스레트	22.00	조규익	포항시 남구 대잠동 470-6	
				창고	스레트	8.80		이동우방파크빌 105-1408	
				까추	스레트	3.00			
				담장	블록	49.51			
				철대문		5.00			
				대문문주		2 개			
				대문천정	콘크리트	2.88			
				감나무	30년생	1 주			
10			148-1	담장	블록	3.88	원갑성	칠포리 148-1	
				철대문		4.00			
				대문문주	블록	2 개			
				대문천정	콘크리트	2.56			
11			152-3	현관(계단)	콘크리트	3.36	이귀순	칠포리 153	
12			140-1	간판기초	콘크리트	0.81	이귀순	칠포리 153	
				담장	블록	5.10			
				간판	0.9*2.5	2.25			
				콘크리트마당30.00					

※ 관계 편입토지조서, 도면등은 포항시청 도시계획과 및 북구청 건설교통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며, 기타 상세한 사항은 북구청 건설교통과(☎054-240-740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 고

포항시공고 제2010 - 239 호

공 인 공 고

포항시공인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공인(전자이미지 공인 포함)의 인영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포 항 시 장 박 승 호

2010. 2. 22

- 1. 등록공인 사용개시일 : 2010. 2. 26
- 2. 등록사유 : 공인마모로 개각
- 3. 등록공인(전자이미지 포함)명 및 인영 : 붙임 1
- 4. 폐기공인(전자이미지 포함)명 및 인영 : 붙임 2

등록공인(전자이미지 포함)및 인영(붙임1)

공 인 명	서체 및 규격	인 영	비 고
포 항 시 남구구룡 포읍장인	한글전서체 가로방향 2.1Cm정방형		공인마모로 개각
민 원 실 구 룡 포 읍 장 인 전 용	한글전서체 가로방향 2.1Cm정방형		”

폐기공인(전자이미지 포함)및 인영(붙임2)

공 인 명	서체 및 규격	인 영	비 고
포 항 시 남구구룡 포읍장인	한글전서체 가로방향 2.1Cm정방형		공인마모로 폐기
민 원 실 구 룡 포 읍 장 인 전 용	한글전서체 가로방향 2.1Cm정방형		”